

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사례 조사

주 현 연구위원(중소·벤처기업실)

I. 출장개요

1. 출장목적

- 2009년부터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,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운영모델 및 분석시스템 마련

2. 출장자

- 출장자 : 중소·벤처기업실 주 현 연구위원

3. 출장기간

- 출장기간 : 2008.10.27(월)~11.2(일) (5박 7일)

4. 출장지역 및 방문기관

- 출장지역 : 미국(워싱턴D.C., 뉴욕)
- 방문기관(워싱턴) : 직업안전보건청(OSHA), 중소기업청(SBA), 관리예산처(OMB), 환경청(EPA)
- 방문기관(뉴욕) : 뉴욕주정부(State of N.Y.), SBA지방광역청(region II)

5. 주요일정

일 자	지 역	시 간	주 요 일 정	비 고
10.27 (월)			인천(ICN) ⇒ 워싱턴 Dulles(IAD)	KE 093 (10:00-9:35)
10.28 (화)	워싱턴	10:00~11:30	직업안전보건청(OSHA) 방문	
		13:00~17:00	SBA(Advocacy, Ombudsman) 방문	
10.29 (수)	워싱턴	10:00~11:30	관리예산처(OMB) 방문	
		13:00~15:30	환경청(EPA) 방문	
	이동		워싱턴(DCA) ⇒ 뉴욕(EWR)	Continental Airline 1112 (7:15-8:37 pm)
10.30 (목)	뉴욕	15:00~16:30	NY 주정부 방문	
10.31 (금)	뉴욕	10:00~12:00	SBA NY광역청 방문	
11.1 (토)	이동		뉴욕(JFK) ⇒ 인천(ICN)	KE 082 (13:50-)
11.2 (일)	인천		도착	KE 082 (-17:35)

II. 방문기관별 면담내역

1. 워싱턴

(1) 직업안전보건청(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; OSHA)

□ 방문일시 : 10.28(화) 10:00~11:30

□ 방문기관 개요

○ 현황 및 연혁

- 직장의 환경개선 및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 노동부 산하의 청으로 설립
- 2008년 기준으로 인원(2,186명), 예산(\$490.3백만달러)이며, RFA담당 부서는 규제분석실(Office of Regulatory Analysis)
- SBREFA법(1996)에 의해 OSHA와 EPA는 규제 도입 시 SBA(OA)와의 사전협의 의무화하여 타 행정기관 보다 강화된 RFA 절차 적용

○ 홈페이지: www.osha.gov

○ 주 소 : U.S. Department of Labor 200 constitution Ave. Washington, DC 20210

○ 면담자 : 규제분석실(Office of Regulatory Analysis)

- Robert Burt (Director), Larry Liberatore (Special Assistant Cooperative Programs)



□ 주요 면담내용

○ RFA(중소기업 규제유연화분석)의 추진요건

- 연방정부의 모든 규제는 RFA분석을 하거나, 아니면 규제 내용이 상당수 중소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함.
- OSHA는 RFA가 법제화되기 전부터 중소기업영향분석을 실시한 바 있음.

<OSHA의 공식적 RFA 추진요건>

- (1) 중대한 영향 : 규제비용이 세전이익 5% 또는 매출액 1%에 해당
 - (2) 상당수 : OSHA가 규정한 산업부문 일체
 - (3) 소규모 조직체 : SBA가 산업별로 규정한 중소기업, 5만명 이하 관할 정부기관, 특정 업무영역을 지배하지 않는 비영리기관
- ※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RFA가 추진될 수도 있음

○ RFA 추진부서

- Directorate of Evaluation and Analysis 산하 규제분석실(Office of Regulatory Analysis)에서 추진 (직원 : 총10명, 모두 경제학자)

- RFA가 수행될 경우 OSHA가 제작하는 Economic Analysis of the Rule's Impact에서 별도의 장(Chapter)에 포함
- RFA 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들은 잘 활용하지 않으며 대신 OSHA 규제 담당부서에 채용된 공학도를 활용
 - 외부전문가 활용은 매우 복잡한 사안의 기술적인 분야에 국한되며 정책목표, 대안 등 규제 핵심 분야 관련은 내부직원이 반드시 추진
 - 외부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1/4 가량임.

○ RFA 진행

- (진행흐름) 사전초기RFA(Preliminary initial RFA) ⇒ (패널검토) 초기 RFA(Initial RFA) ⇒ (이후 과정) 최종RFA(Final RFA)
- RIA는 모든 규제에 대해 수행하는 반면, RFA는 전체의 약 50~70% 가량만 수행, 따라서 RIA에서 생산된 정보가 RFA에 활용되기도 함.
- 규제 제안에 2~3년, 최종규제안 확정에 4~5년이 소요되는 등 OSHA의 규제 작성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음.

<RFA의 주요내용>

- 1) 규제의 추진사유, 추진목적,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분야 및 숫자
 - 2)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신고·부기·준수요건 등의 규제 준수비용을 단가를 기준으로 총비용으로 환산
 - 3) 여타 연방규제와의 중복 가능성, 규제목적은 유지하며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 탐색
 -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이한 규제준수 요건 혹은 시한을 적용, 신고요건 명확화, 통합 및 단순화, 규제적용 (일부)면제
- ※ 최종규제안은 SBA OA(Office of Advocacy)의 의견서, 중소기업 의견서 및 OSHA의 답변서를 포함하며, SBREFA패널이 구성되는 경우(중요규제) 패널권고안 및 OSHA답변서도 포함함.

○ SBAR 패널구성 및 운영

- 직업안전보건청(OSHA)의 ORA(Office of Regulatory Analysis), 중소기업청(SBA)의 OA, 관리예산처(OMB)의 OIRA(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)로 구성되며, OSHA의 ORA가 위원장 역할을 수행
 - 중소기업 대표(Small Entity Representatives; SERS)를 선정하여 패널에 참가시킴
 - 중소기업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SERS에 업종협회는 배제하며, SERS에 참여할 중소기업인을 선정하는 과정에만 업종협회를 활용
- SERS와 통신회의를 거쳐 중소기업 의견서를 검토하여 OSHA부청장에 검토결과에 대한 권고보고서 제출
 - 운영기간은 법령상 60일이 원칙이나 일부는 120일 가량 소요되기도 함.
- 권고안 제출이 패널의 주요 역할이며, OSHA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패널권고안은 구속력을 획득한 것으로 판단
- 패널소집을 거친 이후라도 OSHA가 내놓은(입법예고, NPRM) 규제안은 또다시 공중의 청문회, 법정검토(judicial review)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변경 가능성은 있음
- OSHA에서 현재까지 SBREFA패널을 거쳐 작성된 RFA는 총 9건이며, 부가로 OSHA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RFA가 6~7건 더 존재
 - OSHA의 SBREFA 패널 소집은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총9건

(2) 중소기업청(SBA) 기업옹호국(Office of Advocacy; OA)

방문일시 : 10.28(화) 13:00~15:00

방문기관 개요

○ SBA(Small Business Administration) 개요

- 1953년 「중소기업법」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정부기관으로 인원 2,600명(2008), 예산 \$580백만달러(2006년)임
- SBA의 인원은 한때 최대 4,500명이었으나 계속 감소하여 현재('08.10) 2,600명 정도이며, 카트리나 사태 때 많은 수의 계약직이 있었고 SCORE 처럼 봉사 활동하는 인력도 있어 정확한 근무인원은 유동적

○ 홈페이지: www.sba.gov

○ 주 소 : U.S.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409 3rd Street, S.W. Suite 7125 Washington, DC 20416

○ OA(Office of Advocacy) 개요

- 1976년 설립되었으며, 규제유연성분석 검토 등 규제완화를 지원
- OA국장은 민간인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음.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대통령과 의회에 직접 보고
 - SBA 내에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직위는 대략 200여개이며, 대통령임명 및 상원의 승인을 받는 직위는 청장, 차장, OA장, 감사(총4개)임.

< OA조직 구성 >

중소기업옹호국(Office of Advocacy)	인원	업무내용
Office of the Chief Counsel	3명	OA국장, 업무 총괄
Office of Economic Research	8명	중소기업관련 통계 및 데이터 수집·유지
Office of Information	6명	중소기업 대상 뉴스 및 정보생성 및 전달
Office of Interagency of Affairs	14명	각 정부기관에서 제시한 RFA 검토
Regional Advocates	10명	지방광역청별 중소기업 옹호활동

- 소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SBA에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발표자료에서 항상 SBA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
- SBA와 OA는 인사교류가 없고, 행정상의 편의로 SBA인사팀에서 복리후생·고용계약만 담당하며 OA는 필요시 SBA를 일개 행정청으로 보고 고소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

○ 면담자 : 기업옹호국(Office of Advocacy)

- Charles A. Maresca (Director, Office of Interagency Affairs), Claudia Rayford Rodgers (Senior Counsel), Jane Boorman (Director, International Visitors)



□ 주요 면담내용

○ OIA 조직구성·운영

- Office of Interagency of Affairs(14명)는 각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RFA를 검토하며, 사무변호사(12명), 연구원·민간기업인(2명)으로 구성
- 변호사는 전문분야별로 각각 통신, 환경, 노동, 보안 등으로 구분
- (13개 분야) 토지·에너지, 정부조달, 환경(2명), 웹사이트, 통신·기술, 안전·운송, RFA순응, 식품·의약·건강, 노동·이민, 금융·경제규제, 제대군인, 조세·연금·안보

- 규제유연화 검토는 대부분 법률적인 내용으로서 변호사가 다수이며, 기타 경제관련 지식 등은 OA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축적함.
- RFA의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데는 2명의 규제경제전문가(Regulatory Economist)가 따로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

○ 지방광역청 기업옹호관(Regional Advocate)

- SBA 지방광역청당 거의 1명(총8명)이며, 독립적으로 일하며 OA와 지역 중소기업 커뮤니티를 잇는 가교역할 수행
- OA가 생산한 정보 전파 및 주정부, 지방 업종협회, 중소기업 등과의 면담을 통해 정보 수집
- 분청에서 직원 2명이 지역광역청의 기업옹호관을 전담 지원하며 지방청에 별도의 지원부서는 없음.
- 매주 정기적으로 OA 국장과 전국 Regional Advocate 간의 전화회의가 실시되며(木, 14:30), 이메일로 회의주제를 사전 송부함(水요일).
 - SBA 지방광역청별로 회의실에는 전화회의 장비 완비

○ RFA 운영

< RFA분석서 검토건수 >

- RFA 분석서 검토건수는 연간 250여건 가량이며, 주요 분야는 환경, 안전 등이고 주요 부처는 EPA, OSHA 등임
- 환경청(EPA)의 경우 건수가 많고 검토의견을 잘 반영함. EPA는 연간 약 100여건의 규제를 도입하는데, 이 중 패널운영이 요구되는 수준의 **중요규제(SISNOSE)**는 1996년 이래 30여건 정도

* 상당수 중소기업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(SISNOSE;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)

- OSHA는 패널이 9개이지만 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으며, EPA는 패널이 30개지만, 세탁업 등 특정 업종에만 영향
- OSHA 및 EPA가 추진하는 패널에 OA 참여는 연간 3~4차례 정도

< 검토에 필요한 자료 확보 >

-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Regional Advocate나 행정관청과 직접 접촉하여 확보하며, 옴부즈만실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규제발굴 및 정비
- 다른 기관에서는 RFA 준비 등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으나, OA에서 외부 법률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극소수로 매우 복잡한 사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음.

< RFA 검토건수 추이>

- RFA 검토 건수는 대통령 임기 기간 내에 균등하지 않으며, 새 정부 직후에는 대통령 업무의지가 반영되어 업무가 폭주되나, 임기 중반에는 업무량이 감소
 - 최근 차기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각종 규제도입이 활발해지고, 그로 인해 다시 업무량 증가
 - 2002년도 행정명령 13272 발효 이전에는 행정관청에 보내는 코멘트레터*(1페이지 간략한 검토의견)가 다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
 - * 행정관청과 주고받은 검토내용은 비공개 원칙
- 주요 기관별 RFA 검토건수
 - EPA : 특정 산업 위주의 규제가 다수여서 OSHA보다 규제 건수가 많음
 - OSHA :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가 다수여서 EPA보다 규제생산속도가 느림

○ RFA 교육훈련

- 온라인교육 시행결과 성과가 낮아, 최근에는 오프라인 교육만 실시
- 정보전파보다 각 정부기관 담당자들이 RFA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관련 지식을 전파·공유할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

○ 주정부 RFA이행 지원

- 중소기업청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의 규제에 관여하지 않으며, 단지 입법모델(Model Regulatory Legislation) 제공 등 분석 Tool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. 다만, 규제소관이 주정부인지 연방정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정부에 관여하기도 함.
- www.business.gov에 중소기업이 실시해야 하는 규제 정보 제시

○ 법원심판(Judicial Review) 청구

- OA는 중소기업이 RFA 관련 송사를 진행할 경우 중소기업의 편에서 법정에 임함(Amicus curiae).
 - RFA Judicial Review 과정에서 OA의 위상이 높아짐
- SBREFA법에 의해 RFA 미준수 법령으로 중소기업이 피해 시 정부기관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청구는 거의 없음
- 피해보상 차원이 아니고 규제를 개선하자는 차원으로, 심판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건은 없고 주요 소송건의 일부로 RFA 미준수를 사용
- 원고(중소기업) 승소 시 법원은 기존규제를 무효화하고 해당관청이 다시 규제를 제정토록 판결하지만, 금전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.

○ 기타

- 의원 입법에는 RFA가 적용되지 않으며, 의원입법에 따라 행정부 시행기관이 규제를 적용할 때 RFA가 적용
 - 예컨대, 최근 회계개혁 관련 의원입법 사베인즈-옥슬리(Sarbanes Oxley) 법에서는 시행기관인 SEC(증권거래위원회)에서 RFA를 시행하고 중소기업

업 적용지연 등의 조치를 추진

- SBA는 RFA분석서 작성업무 지원을 위한 별도의 SOP(Standard Operation Procedure)를 갖고 있지 않지만, EPA는 상세한 SOP를 보유
- 주요 성과는 대통령보고서(Report on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) 참조

(3) 중소기업청(SBA) 옴부즈만실(Office of National Ombudsman; ONO)

□ 방문일시 : 10.28(화) 15:00~17:00

□ 방문기관 개요

○ 기관개요(설립, 지위, 역할)

- 중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(SBREFAB법)에 의해 1996년 설립, 연방규제의 집행이 중소기업에 친화적이 되도록 활동, 규제집행공정화 위원회 활동을 지원
- ONO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나 OA국장과 달리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아, SBA에 대해 독립적이지 않음. 의회에 6개월마다 보고서 제출
- 본청직원(8명), 10개지방청별(4~5명)
- 규제관련 중소기업들의 불만·애로사항 수집이 주요 임무이며, 애로사항이 집중되는 규제를 OA와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해결책을 회신
- 각 지방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각종 유관단체, 협회 등과 커뮤니케이션 추진, 중소기업들에 대한 옴부즈만 홍보
- OA가 산업, 업종관련 이슈에 대한 사전 분석을 실시한다면 옴부즈만실은 사후적인 대응 및 개별 중소기업 관련 이슈에 대한 애로해결에 집중

- 주소·홈페이지 : SBA(OA)와 상동
- 면담자 : 옴부즈만국(Office of National Ombudsman)
 - Martin Gold (Deputy National Ombudsman), Christina G. Marinos (Special Assistant to the National Ombudsman)



□ 주요 면담내용

○ 지방광역청별 규제집행공정화위원회(Fairness Board)

- 지방청별로 4~5명이며, 본청 옴부즈만의 자문역할 수행, 규제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송부, 보통 4~5개 주의 대표 구성
 - 전임위원, 상원위원, 상공회의소 구성원 등이 추천하면 옴부즈만실에서 정당, 지역, 옴부즈만 수혜 경력, SBA와 이해상충(용자 혜택 여부)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안배·조정한 후 승인
- 옴부즈만실에서 총회(연간 1회) 개최 시 지방광역청의 규제집행공정화위원을 워싱턴에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

- 민간 주도로 운영되므로 연간 1회 출장비 지원 외에 별도 예산지원 없음
- 지역별로 규제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심각할 경우 공정화위원회 주도로 옴부즈만이 참가하는 청문회 등을 개최
- 지역별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사례로는, 워싱턴주는 목재 관련, 아칸사스주는 광산업 관련 이슈

○ 규제관련 민원의 주요 분야 및 처리건수

- 관련 통계가 없으며, 최근 FDA에 단일 이슈에 가장 많은 코멘트를 한 바 있으며, 신설된 국토안보국(Homeland Security)이 항공관련 규제 등 다수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양산함.

○ 연방정부의 규제관련 민원해소 유도

- 규제 애로사항 해결과 관련하여 각 정부기관을 6개의 등급(A~F)으로 평가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며, 등급조정을 통해 행정관청의 협력을 유도
- 해당 정부기관에 강제력은 없으나 기관장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기관의 애로 사항 해결노력에 일정한 역할

○ 주정부 규제개혁 지원 및 기타사항

- 연방정부 외에 주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TOOL을 지원하는 수준이며, 각 주마다 옴부즈만이 개별적으로 운영됨.
- 업계 의견수렴은 90% 이상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함.

(4) 관리예산처(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; OMB) 정보규제국(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; OIRA)

□ 방문일시 : 10.29(수) 10:00~11:30

□ 방문기관 개요

○ 기관개요(설립, 지위, 역할)

- OMB에 소속된 대통령 직속 부속기구로 중앙정부의 핵심에 해당하며 1982년 문서감축법 발효와 함께 탄생
 - 정보규제국(OIRA)의 담당영역은 규제정책·정보정책·통계 및 과학정책, RIA와 관련해 SBA와 밀접한 업무관계를 유지
 - OIRA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승인하며, OIRA 국장은 예산과 관련 OMB 청장에게 직접 보고
 - 예산관련 권한으로 기관들이 규제 검토를 제대로 하도록 요청 및 강제
 - 50명의 정규직원이 있으며 이 중 50%정도는 정책 애널리스트, 경제 애널리스트, 규제 검토 전문가로 구성
 - OIRA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규제 검토 권한을 보유, **합동검토**를 통해 규제가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
 - 행정명령에 따라 각 기관들은 규제로 인한 비용·편익을 검토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, 이를 통해 OIRA는 편익 극대화를 추구
- 주소 : 725 17th Street, Washington, DC 20503 (백악관건물 북서쪽 100m인접)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omb.gov>
- 면담자 : 정보규제국(OIRA,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)
- Wendy Liberante (policy analyst & Government-to-Business portfolio manager), Alexander T. Hunt (Branch Chief, Information Policy)
- * Wendy Liberante는 정보정책 담당으로, 규제 관련 정보 수집 및 검토 역할을 수행



□ 주요 면담내용

○ RIA 개요

- RIA는 대통령 행정명령(12866호)에 따라 미 관리예산처(OMB)에서 마련한 지침에 의해 수행
- 연간 총 2,200건의 규제 중 500~700건(25%)을 검토하며, 그 중 75~105건(15%)을 경제적으로 중요규제로 간주
- OIRA는 90일 동안 규제를 검토하며, 해당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해당 모든 기관에게 보냄(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요청).
- 기관들은 OMB가 자신들의 규제 검토를 완료하여 규제 공표를 위해 OIRA의 제안이나 권고 사항 등 OIRA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
- 기관들과 OIRA와의 협의 후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규제를 반려통지와 함께 기관에게 돌려보내 재검토를 요청
- OIRA는 기관들에게 OIRA를 방문하여 규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실시해 줄 것을 요구

○ RFA 개요

- RFA는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법률(1980년 RFA법, 1996년 SBREFA법)에 의한 준수 의무사항이며, 미이행 시에는 해당 규제가 법원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.
 - 국토안보부의 "No Match Rule"(고용주들이 직원 고용 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직원의 사회보장번호를 정부기록과 대조하여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)은 법원에서 소규모 조직체에 미치는 규제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 명령을 내린 바 있음.
 - OIRA가 규제영향을 검토 시 기관들의 규제영향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SBA 옹호국(OA)을 참여시킴
 - 규제가 소규모 조직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제 초안과 분석 내용을 중소기업 옹호국(OA)과 공유하고 의견을 요청
 - 얼마나 많은 조직체들이 규제에 의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특히 중대한 영향을 받는지는 분석가들이 결정
 - 행정 기관들이 규제가 상당수의 소규모 조직체(중소기업 포함)에 중대한 경제적인 영향*을 미치는지를 결정할 것을 요구
- * 1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 등
- SBREFA법(1996년)에 의해 OSHA와 EPA는 규제 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 반영(SBA와 협의)을 의무화
 - 기관들이 규제를 검토한 결과 해당규제가 소규모 조직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이 나면 더 구체적으로 비용·편익을 조사

○ OIRA와 SBA의 관계

- OIRA-SBA 양해각서는 최근에 마련된 행정명령13272호에 따라 OIRA와 SBA(OA)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체결
- OIRA가 하는 규제 관련 업무에 SBA 기업옹호국(OA)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, OIRA와 기업옹호국은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
- 초기단계부터 기업옹호국을 개입시켜 중소기업의 규제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
 - * OIRA는 SBA와 이메일, 전화, 회의 등으로 업무협조를 하며, 정해진 문서형식은 없으며 협조형식은 매우 유동적
- 현재 검토 중인 규제는 6개 정도, 하루에 많게는 5차례 이상 SBA와 접촉하여 정보를 교환, 현재는 부시행정부 말기로 업무가 폭주
- OIRA와 SBA간 인사교류는 흔치 않음(상대기관에서 6개월 정도 근무)

○ 주정부 규제 관련

- OIRA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주정부 규제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
- 각 주마다 중소기업 정의가 다르고 연방정부도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.
- 문제해결을 위해 주정부·연방정부의 규제를 일치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.

○ 관련 정보(사이트)

- OIRA 관련 웹사이트로 의견서, 문서, 분석서 등 정보를 제공 (<http://www.reginfo.gov>, <http://www.regulations.gov>)

(5) 환경청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; EPA)

□ 방문일시 : 10.29(수) 13:00~15:30

□ 방문기관 개요

○ 기관개요(지위, 역할)

- 환경청(EPA)내에서 규제업무* 담당은 OPEI(Office of Policy, Economics & Innovation),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 도모

* 규제유연성분석(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), 중소기업 규제영향 검토패널 (Small Business Advocacy Review Panel) 운영

- 연간 250개 정도의 규제를 발표하며 1996년 이후 32개 패널을 진행

· 2008.10월 현재 패널 완료 29개, 운영 중 3개

○ 주소 : 1200 Pennsylvania Ave. Washington, DC 20460 (백악관건물 남동쪽 600m)

○ 홈페이지 : <http://www.epa.gov>



- 면담자 : OPEI (Office of Policy, Economics & Innovation)
 - Nicole N. Owens (Director, Regulatory Management Division), Lanelle Bembenek Wiggins (Economist, Research and Program Support Division), Caryn Muellerleile, Lakeshia Walker (Environmental Protection Specialist)

□ 주요 면담내용

A. 초기 규제유연화분석(Initial RFA) 진행

- 중요규제의 경우 패널(SBAR)을 운영하며 초기규제유연화분석(IRFA)한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작성한 후 입법예고(Notice of Proposed RuleMaking; NPRM)
- EPA사무소에 패널진행 수행지침* 작성 하달

* EPA's Action Development Process (Final Guidance for EPA Rulewriters : Regulatory Flexibility Act)

1) RFA확인 여부 판정 (중요규제여부 판정)

- ① 비 중요규제로 결론 : 해당규제가 상당수의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
 - 실제로 대부분의 규제가 비 중요규제이며, 일부 가능성 있는 규제는 내용을 수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 중요규제로 RFA 확인
- ② 중요규제로 결론 : 중소기업 규제영향검토판널(SBAR, Small Business Advocacy Review Panel) 운영

<중요규제 여부 판단>

- 규제가 상당수의 중소기업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(규제발표 시 전자시스템에 포함)
 - 영향 받는 업체 수, 영향정도(매출액대비 비율)를 고려하여 판단
 - * (3%이상) 중요규제
 - (1-3%) 상황을 고려 선택적으로 판단
 - (1%미만)비 중요규제
- 규제에 영향을 받는 업체를 일정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 실시
 - * 20명 미만 사업장, 200명 미만 사업장 등

< 평가대상별 평가항목(권장) >

중소기업	매출액(권장)	규제순응비용의 매출액대비 비율(%)
	현금흐름	현금흐름대비 부채자본 순응비용
	순익	규제순응비용의 순익대비 비율(%)
중소 공공기관	정부수입(권장)	정부수입대비 규제순응비용(%)
	소득	중간가구수입대비 가계의 규제순응비용(%)
중소 비영리기구	지출액(권장)	운영지출액 대비 규제순응비용(%)
	자산	총자산대비 규제순응비용(%)

<중요규제 여부 판단기준(권장)>

경제적 영향	영향받는 중소기업 수	대상 중소기업 비율(%)	중요규제(SISNOSE) 여부 판정
모든 기업에 1%미만의 영향	무관	무관	비 중요규제
1개 이상의 기업에 1%이상의 영향	100개미만	20% 미만	비 중요규제
	100개미만	20% 이상	불확실
	100~999개	20% 미만	비 중요규제
	100~999개	20% 이상	불확실
	1,000개이상	무관	불확실
1개 이상의 기업에 3%이상의 영향	100개미만	20% 미만	비 중요규제
	100개미만	20% 이상	불확실
	100~999개	20% 미만	불확실
	100~999개	20% 이상	중요규제
	1,000개 이상	무관	중요규제

2) 패널 구성·운영

- (패널구성) 규제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대표명단을 SBA에 제공, SBA는 15일 안에 해당명단에 대한 응답 송부
- (패널운영) 운영기간은 법령에 따라 60일 정도가 소요되어야 하나, 일부는 SBA·OMB·중소기업대표자들과의 협의관계로 3~6개월 정도 소요
- ① (Pre-panel 회의) 잠재적인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며 EPA는 대표들이 참고할 자료를 준비하며, SBA와 OMB는 게스트로 참여
 - EPA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식 회의에 참여할 중소기업대표를 결정

<패널에 참여할 중소기업 대표 선정>

- 패널 참여자를 결정할 최종 권한은 EPA에 있으며, SBA에 통보를 하고 SBA가 응답하면 중소기업 대표들과 두 차례 회의 개최
- 대표선정 관련 EPA·SBA간에 의견차이 존재, EPA는 업계 혹은 협회보다 실제 중소기업의 패널 참여를 선호하나, SBA는 그렇지 않음.
 - (1) EPA입장 : 업계협회는 명목상 대·중소기업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나,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.
 - (2) SBA입장 : 업계협회가 재원도 많고 중소기업 대표의 경우 회의에 참여할 시간 여력이 없음.

- ② (공식panel 회의) SBA·OMB 모두 참여하여 지원하며, 수차례 회의 및 이메일 교환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작성
 - 이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규제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, 기록관리방법, 규제준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
 - 연방정부의 타 규제와의 갈등·중복여부 및 규제대안을 검토

-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행정기관들이 제안한 규제대안들에 대한 의견 수집, 규제의 효과, 기술의 효과 등에 대해서 논의

- 중소기업의 대안·의견서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.

③ (보고서 작성·제출) 두 차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대표들의 의견을 수렴 후 SBA·OMB 패널 멤버들과 다시 만나 중소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검토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EPA 청장에 제출

- 패널보고서는 행정기관에서 규제 제정 시 중요하게 고려

- 패널이 만장일치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, 권고사항에 패널들의 다른 의견들을 모두 제시

- 필요 시 외부 계약업체에 보고서 작성이나 의견 검토 등을 요청하며, 대부분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 컨설팅 업체임

3) 규제안 작성

- 규제안 작성은 EPA가 단독으로 하고 OMB에서 최종 검토를 거친 후 연방 관보에 입법예고(NPRM)

- 일반대중의 의견을 구하며 발표된 규제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 제시가능

<SBA·OMB와 이견 시 처리방법>

- 이견 발생 시 법무팀에 자문을 구하며, OMB의 최종검토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시토록 요청하며,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조율

- * EPA는 환경보호, SBA는 비용을 중요시 함

- 경제분석(Economic Analysis)결과 비용과다로 판정된 규제의 경우 비용에 상관없이 실행하기도 하나, 경우에 따라 제안을 포기하기도 함

- OMB와 의견충돌이 자주 발생하며, OMB는 구체적 통계자료 제시를 요구하나 환경문제의 경우 통계수집이 어려움

B. 최종 규제유연화분석(Final RFA) 진행

1) 최종규제안 작성

- 입법예고(NRPM) 후 공중에서 제기된 진술을 검토하고 대안들을 선택

2) 최종RFA 인증 여부 판정

- ① 최종RFA인증(YES) : 규제가 상당수의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증(사실관계 설명)
- ② 최종RFA인증(NO) : 최종규제유연화분석(FRFA) 실시, 규제준수가이드 (Compliance Guide) 작성

3) 최종규제안 등록

- OMB의 검토를 위한 FRM(Final Rulemaking)준비, 최종규제 관보 게재

2. 뉴욕

(6) 뉴욕주정부(N.Y. State), GORR(Governor's office of Regulatory reform)

방문일시 : 10.30(목) 14:00~15:30

방문기관 개요

○ 기관개요(지위, 역할)

-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(뉴욕주정부 맨하탄사무소), 뉴욕주 중소기업 투자관련 지원 업무 수행

○ 주소 : 633 Third Ave. New York, New York 10017
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empire.state.ny.us>
- 면담자 : 뉴욕주정부 맨하탄사무소 ESDC(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)
 - Sam Natapoff (Senior Advisor to the Governor), Judith Garner (Senior Vice President of Small Business Development), Peter Constantine (Specialist, International Division)

□ 주요 면담내용

- 주정부 규제개혁실(GORR, Governor's Office of Regulatory Reform) 담당자와의 면담 불발로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하지 못하고, ESDC의 중소기업 기능 등에 대해 청취
- GORR담당자 연락처
 - Joe Wolfe (1-518-473-0099) jwolfe@gorr.state.ny.us

(7) SBA NY지방광역청 (SBA, Region II)

□ 방문일시 : 10.31(금) 10:00~11:30

□ 방문기관 개요

○ 기관개요(지위, 역할)

- NY주, NJ주, Puerto Rico, Virgin Islands 관할 SBA지방청
- Regional Advocate(1명)는 독립적으로 일하며 본청의 중소기업옹호국(OA)을 대표하여 지역 중소기업계를 연결
- 주소 : 26 Federal Plaza, New York, New York 10017
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sba.gov>



- 면담자 : SBA (Region II 지방광역청, District Office 지역사무소)
 - Michael Pappas (Regional Administrator), Chistine Glassner, Regional Advocate (출장 중), Stephen Adams (Region I, Regional Advocate)(전화회의)
 - Ronald A. Goldstein (Assistant District Director of Economic Development, N.Y. District Office)

□ 주요 면담내용

○ 주요 업무내용

- 지역의 중소기업계가 연방, 주, 지역단위에서의 규제정책에 규제유연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응
-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·규제와 관련된 정책정보 수집 및 지역의 주정부, 업계, 학계, 공동체등과 긴밀한 교류관계를 유지하여 본청OA의 조사 진행을 지원
- 본청직원(2명)이 전체 Regional Advocate의 지원을 전담하며, 지방청에는

지원부서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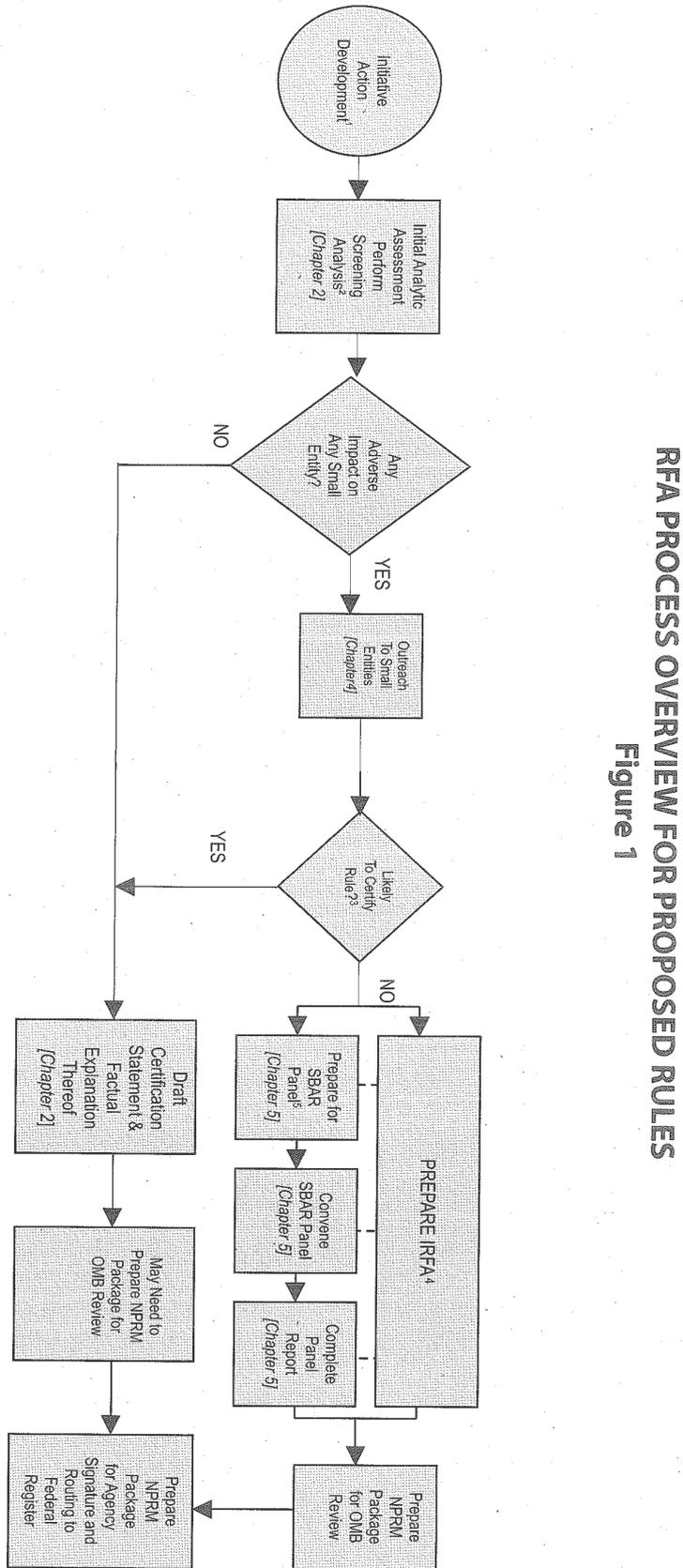
○ 본청과의 업무교류

- 매주(木, 14:30) 본청OA국장과 전체 Regional Advocate와 전화회의, 이메일로 회의주제 사전송부(水), 지방청별로 전화회의 장비가 잘 구비되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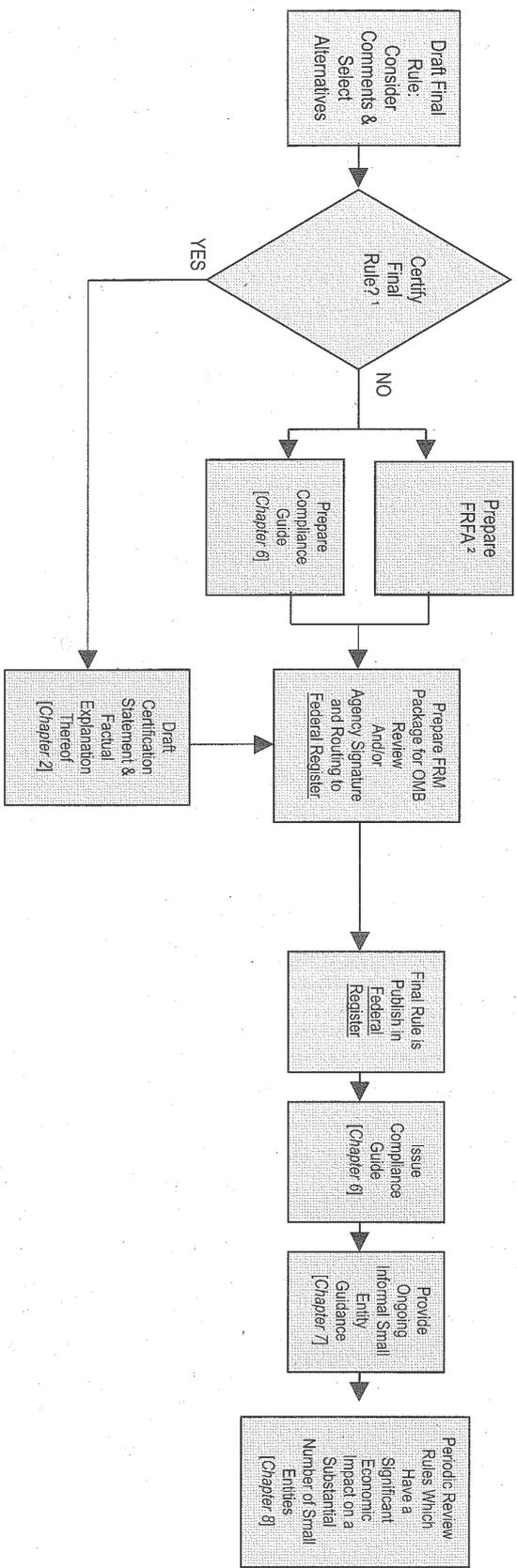
<첨부1> 미국 환경청(EPA)의 중소기업규제영향검토판널(SBAR) 운영 현황

순번	규제명	패널시작	패널종료	입법예고 (NPRM)	공포
1	Nonroad Diesel Engines	03/25/97	05/23/97	09/24/97	10/23/98
2	Industrial Laundries Effluent Guideline	06/06/97	08/08/97	12/17/97	(제안철회)
3	Stormwater Phase II	06/19/97	08/07/97	01/09/98	12/08/99
4	Transportation Equipment Cleaning Effluent Guidelines	07/16/97	09/23/97	06/25/98	08/14/00
5	Centralized Waste Treatment Effluent Guideline	11/06/97	01/23/98	09/10/03 01/13/99	12/22/00
6	UIC Class V Wells	02/17/98	04/17/98	07/29/98	12/07/99
7	Ground Water	04/10/98	06/09/98	05/10/00	11/08/06
8	FIP for Regional NOx Reductions	06/23/98	08/21/98	10/21/98	04/28/06
9	Section 126 Petitions	06/23/98	08/21/98	09/30/98	05/25/99
10	Radon in Drinking Water	07/09/98	09/18/98	11/02/99	
11	Long Term 1 Enhanced Surface Water Treatment	08/21/98	10/19/98	04/10/00	01/14/02
12	Filter Backwash Recycling	08/21/98	10/19/98	04/10/00	06/08/01
13	Arsenic in Drinking Water	03/30/99	06/04/99	06/22/00	01/22/01
14	Recreational Marine Engines	06/07/99	08/25/99	10/05/01 08/14/02	11/08/02
15	LDV/LDT Emissions and Sulfur in Gas	08/27/98	10/26/98	05/13/99	02/10/00
16	Diesel Fuel Sulfur Control Requirements	11/12/99	03/24/00	06/02/00	01/18/01
17	Lead Renovation and Remodeling Rule	11/23/99	03/03/00	01/10/06	
18	Metals Products and Machinery	12/09/99	03/03/00	01/03/01	05/13/03
19	Concentrated Animal Feedlots	12/16/99	04/07/00	01/12/01	02/12/03
20	Reinforced Plastics	04/06/00	06/02/00	08/02/01	04/21/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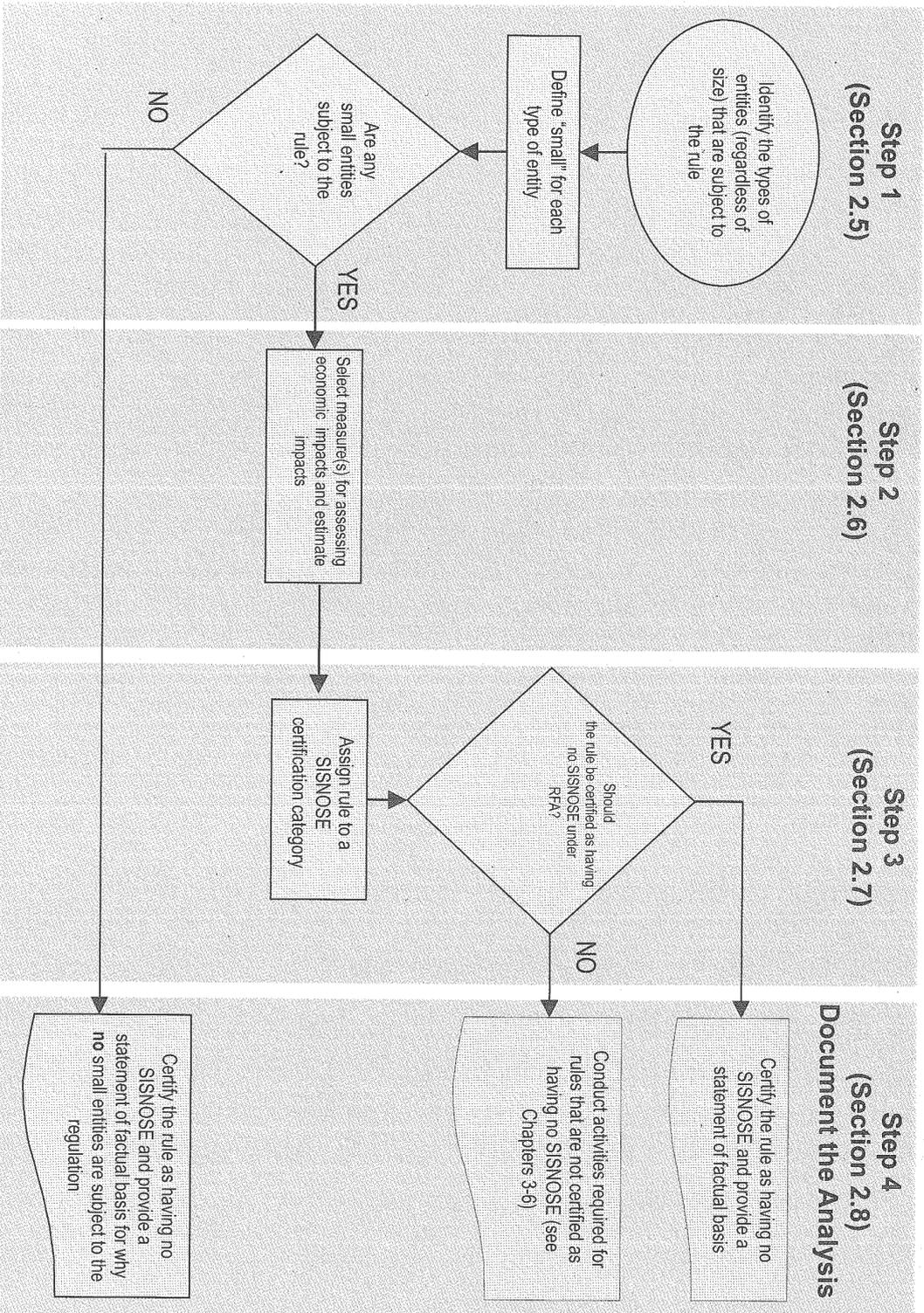
	Composites				
21	Stage 2 Disinfectant Byproducts Long Term 2 Enhanced Surface Water Treatment	04/25/00	06/23/00	08/11/03 08/18/03	01/04/06 01/05/06
22	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	07/16/01	10/12/01	06/24/02	(제안철회)
23	Nonroad Large SI Engines, Recreation Land Engines, Recreation Marine Gas Tanks and Highway Motorcycles	05/03/01	07/17/01	10/05/01 08/14/02	11/08/02
24	Aquatic Animal Production Industry	01/22/02	06/19/02	09/12/02	08/23/04
25	Lime Industry - Air Pollution	01/22/02	03/25/02	12/20/02	01/05/04
26	Nonroad Diesel Engines - Tier IV	10/24/02	12/23/02	05/23/03	06/29/04
27	Cooling Water Intake Structures Phase III Facilities	02/27/04	04/27/04	11/24/04	06/15/06
28	Section 126 Petition (2005 CAIR Rule)	04/27/05	06/27/05	08/24/05	04/28/06
29	FIP for Regional Nox/So2 (2005 CAIR Rule)	04/27/05	06/27/05	08/24/05	04/28/06
30	Mobile Source Air Toxics	09/07/05	11/08/05	03/29/06	02/26/07
31	Non-Road Spark-Ignition Engines/Equipment	08/17/06	10/17/06	05/18/07	10/08/08
32	Total Coliform Monitoring (TCR Rule)	01/31/08	03/31/08		



RFA Process Overview for Final Rules
Figure 2



Screening Analysis Overview
Figure 3



Small Entity Compliance Guides
Figure 5

